

---

# 일반대학원 평가 보고서

---



2016. 12.

**광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목 차

I. 정량지표 .....	3
1. 학사운영 및 관리 .....	3
2. 교육 및 연구 역량 .....	4
3. 교육여건 및 지원 체계 .....	5
II. 정성지표 .....	8
1. 일반대학원 목표 및 계획 .....	8
2. 학사운영 및 관리 .....	11
3.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	17
4. 학위수여체제 .....	23
5. 교육 및 연구 역량 .....	28
6.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	30

# I. 정량지표

## 1. 학사운영 및 관리

### 1.1 신입생 충원율

○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111.3%	104.5%	103.6%	
신입생 충원율(정원내외)	125.2%	134.5%	111.8%	

### 1.2 외국인 학생 비율

○ 최근 3년간 외국인 학생 비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외국인 학생 비율	18.8%	33.1%	33.3%	

### 1.3 재학생 충원율

○ 최근 3년간 재학생 충원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재학생 충원율(정원내)	92.3%	99.2%	105.9%	
재학생 충원율(정원내외)	102.3%	118.1%	124.1%	

## 1.4 중도 탈락 학생 비율

○ 최근 3년간 중도 탈락 학생 비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중도 탈락 학생 비율	8.8%	3.8%	8.8%	

## 2. 교육 및 연구 역량

### 2.1 전임교원 연구 실적

○ 전임교원의 논문 실적

학 년 도	전임 교원 수	논문 실적						교수당 논문 실적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전문	국제 전문
		국내 전문	국내 일반	계	국제 전문	국제 일반	계				
2014	83	13.8	14.4	28.2	0.4	1.1	1.5	0.34	0.02	0.17	0.00
2015	84	15.7	17.0	32.7	1.9	0	1.9	0.39	0.00	0.19	0.02
2016	80	41.1	22.5	63.6	7.1	0	7.1	0.79	0.00	0.51	0.09

○ 전임교원의 저·역서 발간 실적

학년도	전임 교원 수	저·역서 실적			교수당 저·역서 실적
		저서	역서	계	
2014	83	3.78	0	3.78	0.05
2015	84	1.23	0.13	1.36	0.02
2016	80	12.24	0	12.24	0.15

## 2.2 졸업생 취업 현황

○ 졸업생 취업 현황

학년도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취업률
	남	여	남	여	남	여	
2014	46	44	29	27	2	3	77.8%
2015	42	31	27	17	1	0	68.8%
2016	28	63	22	28	1	6	-

## 2.3 연구비 수혜 실적

○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혜 실적

학년도	교원 수	과제 수	연구비(천원)	교원1인당 연구비(천원)
2014	83	16	96,125	1,158
2015	84	31	240,640	2,865
2016	80	84	563,827	7,048

## 3. 교육여건 및 지원 체계

### 3.1 전임교원 확보

○ 일반대학원 교수당 학생 수

학년도	재학생 수(A)	교수 수(B)	교수당 학생 수(B/A)
2014	387	83	4.67
2015	396	84	4.71
2016	385	80	4.81

### 3.2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일반대학원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학년도	총 개설 학점	전임교원 담당 학점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2014	930	544	58.5%
2015	912	539.5	59.2%
2016	837	530.5	63.4%

### 3.3 행정직원 확보

○ 행정직원 및 전공 현황

학년도	재학생 수	전공 수	행정직원 수	비고
2014	387	26	4	
2015	396	29	4	
2016	385	29	4	

### 3.4 대학원생 연구공간 규모

○ 대학원생 연구공간 규모

학년도	재학생 수	연구공간 면적(m <sup>2</sup> )	학생 1인당 연구공간(m <sup>2</sup> )	비고
2014	387	276.9	0.72	
2015	396	276.9	0.70	
2016	385	276.9	0.72	

### 3.5 대학원생 장학금 규모

○ 대학원생 1인당 장학금

학년도	재학생 수	장학금(천원)	학생 1인당 장학금(천원)	비고
2014	387	864,162	2,233	
2015	396	765,104	1,932	
2016	385	621,149	1,613	

### 3.6 대학원 재정 규모

○ 대학원 운영 경비

학년도	재학생 수(A)	대학원 운영비 총액(B)	대학원생 1인당 운영비(B/A)
2014	387	1,167,941천원	3,017천원
2015	396	1,458,664천원	3,683천원
2016	385	1,547,505천원	4,019천원

## II. 정성지표

### 1. 대학원 목표 및 계획

#### 1.1 대학원의 목표

본교 대학원은 지도자적 인격과 창조적 능력을 함양하여 인류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급인력양성을 위하여 지식인 육성, 능력인 육성, 지성인 육성” 등 3대 교육목표를 설정

#### ①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1.1 교육목표	대학원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명료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교육목표를 교육실천의 목표로 삼고 있음	충족(P)

####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첨부	대학원증장기발전계획

#### ② 자체진단평가 내용

- 우리 대학원은 급변하는 21세기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게 최적의 교육, 연구 환경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 ‘다양한 학문영역의 창조적 이론과 응용방법을 통하여 심오한 학문적 이론과 독창적 전문기술을 지닌 지식인을 육성’,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신장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유능한 능력인을 육성”,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적응력과 창조력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및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성인을 육성” 등 3대 교육목표로 설정함



<그림 1> 대학원 교육목표

## 1.2 대학원 발전 계획

본교 대학원 입학정원은 2016년 현재 석사과정 28개 학과 75명, 박사과정 13개 학과 35명으로 총 110명이며, 2016년 지난 30년간의 역사와 경험으로 호남권 최고의 대학원으로서의 발전과 학문영역별 특성화 실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

### ① 자체진단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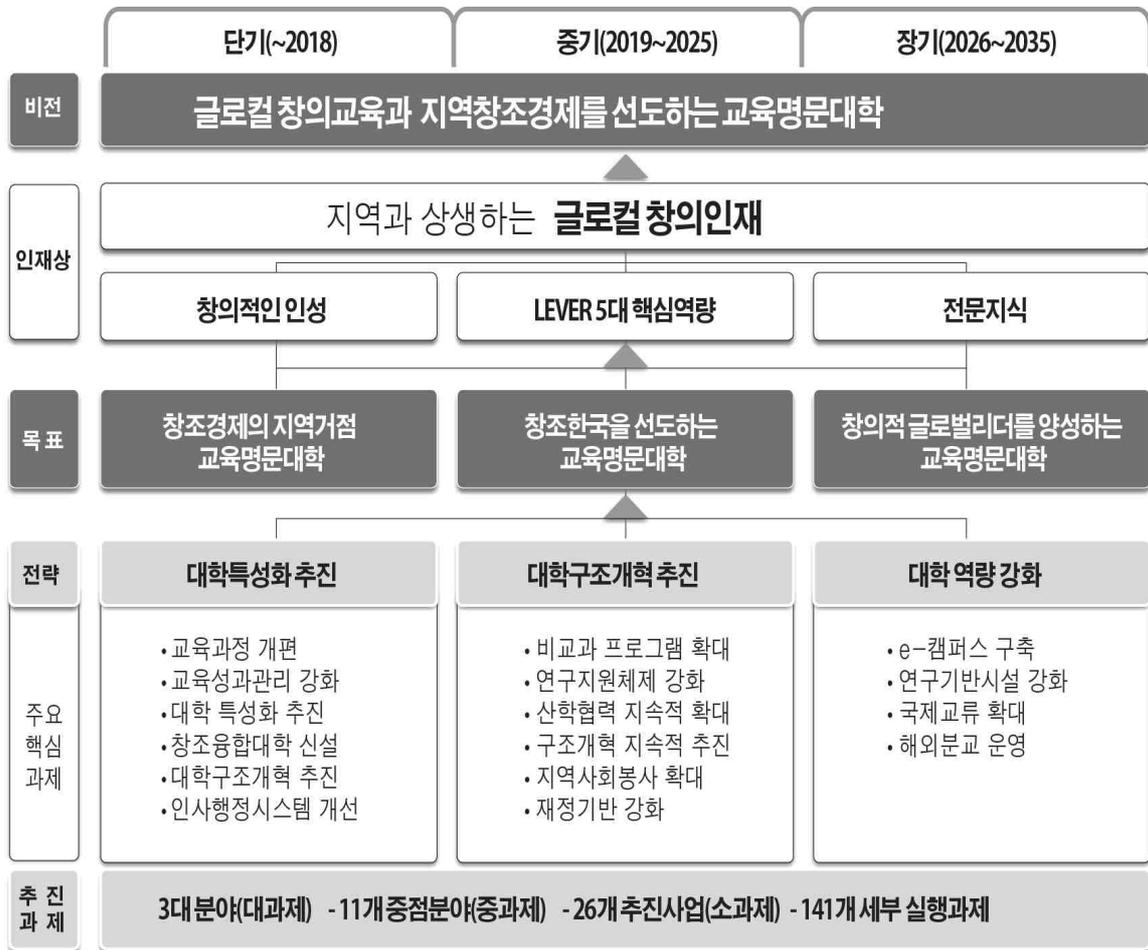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1.2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특성화계획의 수립	대학원이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은 구성원의 요구분석과 미래사회 인재수요 및 대학원의 역량을 토대로 적절히 수립되어 있음	충족(P)

###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첨부	대학원중장기발전계획

### ② 자체진단평가 내용

- 우리대학은 '16년 대학전체의 중장기발전계획인 「GU Vision 2030+」 을 수립



<그림 2>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 대학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특성화, 세계화, 지역화를 통한 “지역과 함께 세계로 비상하는 광주대학교” 대학원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설정



<그림 3> 대학원 중장기발전 목표 및 방향

## 2. 학사운영 및 관리

대학원의 학사운영(입학전형, 지도교수 선정, 자격시험, 논문심사, 성적관리, 수업평가 등)의 학사관리 지침 및 규정을 구비하고 엄정하고 적절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1 주요학사 관리 규정

학칙과 시행세칙 등 관련규정에 입학과 졸업, 교과과정 및 수업평가, 학적변동 등 학사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①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학사관리 규정	본 대학원은 학사관리에 대한 제반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그 내용이 합리적임	충족(P)

##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학사관리규정(입학전형규정, 장학규정, 학위수여규정, 논문작성에 관한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 ② 자체진단평가 내용

- 대학원은 학사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학사관리 규정(학칙과 학칙(대학원)시행규칙대학원 등)은 다음과 같음

구분	관련 규정	주요 내용
입학전형	학칙(대학원) 시행세칙 제13조, 입학전형규정	대학원 시행세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입학전형(연구과정생 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수업연한	학칙 제16조	제16조(수업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학과와 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4.10.20, 2007.12.27> ②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이상, 석사·박사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3.1>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학사과정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학과는 제외),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4.10.20, 2007.12.27> 1. 학사과정 : 1년 2. 석사과정 : 6월 3. 박사과정 : 6월
교육과정	학칙제 35조 학칙(대학원) 시행세칙 제22조	<학칙> 제35조(교육과정) ①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원과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학칙시행규칙> 제22조(교육과정 및 교과목개설) ①<삭제 2013.9.24> ②매학기 개설할 교과목은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소속 교수들과 협의·편성하여 매학기 개시 3개월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적변동	대학원 시행세칙 제16조	제16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에서 정한 휴학기간 경과 후 첫 번째 학기의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6.9.1> 3. 학업부실 등의 사유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대학원에 재학 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학점이수	학칙(대학원) 시행세칙 제24조(이수학점)	1. 석사과정: 24학점(연구과정 이수자는 12학점) 2. 박사과정 : 36학점
자격시험	외국어 및 종합시험시행에 관한 규정	대학원의 석사학위청구논문제출 등의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하여 그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

### ③ 자체진단 평가의견

- 대학원의 주요 학사관리 운영 관련 규정(학칙과 학칙(대학원)시행세칙, 입학전형규정, 장학규정, 학위수여규정, 학위논문작성에 관한규정, 외국어 및 종합시험시행에 관한 규정 등)을 잘 정비하고 있고,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음.

## 2.2 입학전형

본 대학원은 학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입학전형이 체계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입학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음

### ①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입학전형	본 대학원은 입학전형에 제반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	충족(P)

###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관련규정	학칙(대학원)시행규칙, 입학전형규정

### ② 자체진단평가 내용

- 대학원은 학칙 시행세칙 제13조(입학전형), 입학전형규정에 의거 엄격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면접/구술시험, 실기시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음

#### <학칙(대학원)시행규칙>

제13조(입학전형) ①대학원에 입학할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전형을 실시하며, 전형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②지원학과(전공)는 신입학의 경우에는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에 구매 받지 아니한다.

#### <입학전형규정>

제4조(전형방법과 전형요소 등) ①입학전형의 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음악학과와 사진학과의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②서류심사에서의 전형요소는 대학 및 대학원 성적과 가산점, 구술시험, 실기고사(실기전형학

과에 한함)로 한다. 전형요소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전형 <개정 2011.12.20, 2015.8.26>

전형요소		배점	비고
대학 및 대학원 성적		75점 만점으로 환산	<별표 1> 참조
우대 점수	공무원(공사 등 공공기관 임직원 포함), 산업체 경력자 및 자영업자 등	5점 만점으로 환산	<별표 4> 참조
면접·구술시험		20점	총 100점 만점

2. 실기고사 실시 전공의 전형 및 과제(사진학과, 음악학과 석사과정)

<개정2013.9.24.>

전형요소		배점	비고
대학 및 대학원 성적		15점 만점으로 환산	<별표1> 참조
실기고사		실기 60점	실기30점 이하는 과락처리
우대 점수	공무원(공사 등 공공기관 임직원 포함), 산업체 경력자 및 자영업자 등	5점 만점으로 환산	<별표 4> 참조
면접·구술시험		20점	총 100점 만점

- 본 대학원은 학칙 시행세칙 제11조(편입학)에 근거 각 학위과정의 여석이 있을 때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계 여부와 학기 인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

### ③ 자체진단 평가의견

-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학칙과 입학전형 시행 내규에 의거 모든 입시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입학전형과 입학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2.3 논문지도교수

본 대학원은 대학원 학과(전공)주임교수 등에 관한 규정에 논문지도교수(논문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 변경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도교수의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①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논문지도교수	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 자격이나 논문지도교수 변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충족(P)

###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관련규정	대학원 학과(전공)주임교수 등에 관한 규정

## ② 자체진단평가 내용

- 대학원은 대학원 학과(전공)주임교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지도교수 위촉), 제4조(지도교수의 임무), 제5조(지도학생의 제한), 제6조(지도교수의 변경)에 의거 체계적인 지도교수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대학원 학과(전공)주임교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지도교수 위촉) ①학생의 논문 또는 작품발표 지도를 위하여 제2학기 초에 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갖춘 교원을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도교수로 위촉한다.

1. 학생과 동일한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학생과 동일한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3. 기타 대학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학과(전공)주임교수가 제1항의 지도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학생과 전공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24.>

제4조(지도교수의 임무) 지도교수는 학생의 석사학위신청논문 작성 또는 작품발표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며 심사위원을 제청한다.

제5조(지도학생의 제한) 지도교수의 매 학기당 지도학생 수는 4명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박사 1인, 석사 3인). 단,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지도교수의 변경) 기 위촉된 지도교수가 질병, 휴직, 또는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울 경우 학과(전공)주임교수가 신·구지도교수와 협의를 거쳐 대학원장에 지도교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 ③ 자체진단 평가의견

- 대학원은 논문지도교수관리는 대학원 학과(전공)주임교수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체

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3.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 3.1 교육과정

대학원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이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 3.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실현을 위해 학과 및 전공특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원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학과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충실하게 운영중에 있음

##### ①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대학원의 교육과정 정책 및 교육과정 편성은 대학원 교육목표와 일관성을 갖도록 규정이 필요함	미흡(w)

#####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첨부	학칙과 학칙(대학원)시행세칙

##### ② 자체진단평가 내용

###### (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 본 대학원은 대학원학칙 제1장에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며,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광주대학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에서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설치한 대학원(이하 “대학원” 이라 칭한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대학원은 교육과정의 개설은 학칙(대학원)시행세칙 제22조(교육과정 및 교과목개설)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목표와의 연관성은 부족함.

제22조(교육과정 및 교과목개설) ①<삭제 2013.9.24>  
②매학기 개설할 교과목은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소속교수들과 협의·편성하여 매학기 개시 3개월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교육과정의 편성

- 대학원의 교육과정의 편성 규정, 절차 및 기준심의가 학칙과 학칙(대학원)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음

### <학칙>

제35조(교육과정) ①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원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 학칙(대학원)시행세칙 >

제22조(교육과정 및 교과목개설) ①<삭제 2013.9.24>  
②매학기 개설할 교과목은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소속교수들과 협의·편성하여 매학기 개시 3개월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자체진단 평가의견

- 교육과정과 교육목표가 일관성을 갖도록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반영 필요
- 교육과정의 편성에 대한 규정, 절차 및 기준심의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의 규정이 필요

## 3.1.2 실험실습실기 교육

본 대학원은 실험·실습·실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공 영역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현장 적응도를 높이는 실험·실습·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준거를 충족함.

### ①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실험실습 실기 교육	전공교육과정의 수업에 있어 실험·실습·실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며, 현장적응성을 높임.	충족(P)

####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현장확인	2016학년도 주요관련학과 실험실습 현황 파악

### ② 자체진단평가 내용

- 본교 대학원의 실험·실습·실기교육은 해당 과목 수업을 위한 실험·실습·실기실에서 이루어지며, 전공교육과정 수업에 있어 실험·실습·실기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며, 현장 적응성을 높이고 있음

### ③ 자체진단 평가의견

- 실습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규정 및 내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립이 필요함

## 3.1.3 교육과정 개정 및 절차

본 대학원은 교육과정 개정 및 절차가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대학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①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교육과정 개정 및 절차	대학원은 교육과정 개정 및 절차를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충족(P)

####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첨부	학칙
현장확인	대학원위원회회의록

## ② 자체진단평가 내용

- 본 대학원은 학칙에 근거하여 대학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교과과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편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제78조(설치 및 구성) ① 본교에 설치·운영하는 대학원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총무처장, 대학원 부원장,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주임교수, 보건상담정책대학원 주임교수 중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단, 주임교수는 부교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 3.1, 2007.9.10., 2010.6.9.,2013.9.25>  
 ③ <삭제 2010.6.9>  
 ④ 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과정의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의 제도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내 학과(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내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6. 박사학위와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 ③ 자체진단 평가의견

- 관련 규정 및 절차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 개편 실적에 대한 회의 자료도 잘 관리되고 있음

## 3.2 교수학습

대학원은 교수법 향상을 위해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전문 조직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여 교수·학습의 성과를 제고하고 있는가?

### 3.2.1 교수법 향상 지원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본 대학원은 2008년 교수학습연구원을 설립하여 교수(Teaching)와 학습(Learning)의 질적 개선과 전문적인 조직 구성을 위해 교수·학습전담교수 및 연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분한 전문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①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교수학습을 위한 예산 및 조직	대학원은 교수학습 개선을 위하여 전문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충족(P)

####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관련규정	교수학습연구원 운영 규정
현장확인	교수학습연구원 구성 및 운영현황

#### ② 자체진단평가 내용

-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센터 규정에 근거하여 교내 부속기관으로 “교수학습연구원”을 설립·운영 하고 있음.

<p>제1조(목적)</p> <p>이 규정은 학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교수학습연구원(CTL :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직 무)</p> <p>연구원은 교수·학습 관련 이론과 방법 연구, 교수·학습 지원 및 e-Learning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광주대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육력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li> <li>② 학습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li> <li>③ e-Learning 기반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li> <li>④ 교육용 콘텐츠 제작 및 개발 관련업무</li> </ol>
---

- 교수학습센터(CTL :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의 조직은 교수지원부, 학습지원부, e-러닝지원부로구성, 운영되고 있음



- 교수학습센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수·학습 전담교수와 전문 연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직교수 2인(원장, 부원장), 전담교수 2명, 정직원(과장, 조교) 5명을 확보하고 있음
- 교육의 질적 개선과 교수·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교수지원, 학습지원, 온라인강의·교육매체지원 등 교육 인프라를 확대, 개선하고 있음

### ③ 자체진단 평가의견

- 교수학습연구원 설립과 관련 규정 및 조직, 예산집행 등 교수학습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수법, 학습법 프로그램이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학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에 부합하는 적합한 교수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4. 학위수여체제

### 4.1 자격시험

본 대학원은 학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자격시험을 관리하고 있음

#### ①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	대학원의 외국어자격시험 및 종합시험 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충족(P)

####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관련규정	학칙(대학원)시행규칙 제31조 외국어 및 종합시험시행에 관한 규정

#### ② 자체진단평가 내용

- 대학원은 학칙(대학원)시행규칙 제31조(학위논문·종합시험·외국어시험), 외국어 및 종합시험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격시험 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음
- 자격시험의 시기, 출제위원, 응시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관하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구분하여 각각 시험과목, 합격인정 및 응시자격, 시험과목 그리고 합격기준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학칙(대학원)시행규칙>

제31조(학위논문·종합시험·외국어시험) 학위논문제출 등의 자격, 절차, 시기,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시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9. 24.>

<외국어 및 종합시험시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의 석사학위청구논문제출 등의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하여 그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1. 외국어시험 : 석사·박사과정에서 1학기 이상 등록한 자<개정 2014.1.15.>

2. 종합시험

가. 각 학위과정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석사과정은 24학점 취득 및 취득예정자, 박사과정은 36학점 취득 및 취득예정자

나. 기 취득한 학점의 총 평점 평균이 B(3.0)이상인 자

제3조(응시절차) ①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 주임교수와 교학팀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일정) ①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할 수 있다.

②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출제위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외국어시험) ①외국어시험은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중에서 응시자가 택일한 외국어의 독해능력의 유무를 평가 한다. <개정 2013.9.24.>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재학중 대학원에서 개설한 외국어 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한 자

2. 최근 2년 이내에 국가공인 외국어 시험에서 영어는 토익 690점, 토플 PBT:474

점, CBT:210점, IBT:84점, 중국어는 HSK(구6급, 신4급), 일어는 JLPT2급, 한국어는 TOPIK 4급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한 증명서를 제출한자 <개정 2013.09. 24>

3. 박사학위 소지자 및 외국 학위 소지자등 대학원위원회에서 면제 판정을 받은 자

제7조(종합시험) 종합시험과목은 각 학위과정에서 이수 또는 이수 중인 과목 중 석사과정은 2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과목은 학과(전공)주임교수와 협의한 후 정한다.<개정 2013.9.24., 2014.10.23>

제8조(합격기준) ① 외국어시험에 대한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에 대한 성적은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9조(재시험) ①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회수에 관계없이 재응시 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총 3회 까지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일부과목에 합격된 자에 대해

여는 차후 2회에 한하여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③ 자체진단 평가의견

- 자격시험(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대한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 자격시험 결과에 대한 합격과 탈락에 대한 비율을 준비해 둔다면 시험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 4.2 학위논문청구

본 대학원은 학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관리하고 있음

### ①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학위청구심사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충족(P)

###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관련규정	학칙(대학원)시행규칙 제31조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 ② 자체진단평가 내용

- 대학원은 학칙(대학원)시행세칙 제29조(석·박사학위의 수여), 31조(학위논문·종합시험·외국어시험),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의거 학위청구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음
- 대학원은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의거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학위청구논문 심사 절차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학위논문제출자격, 학위논문심사 과정을 통해 논문내용의 적격성과 연구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음

- 논문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 논문인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인 경우 5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을 외부인사로 의뢰할 경우심사위원 중 석사학위는 1인, 박사학위는 2인을 외부인사를 초빙하도록 규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음

<학칙(대학원)시행세칙>

제29조(석·박사학위의 수여) ①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 그 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및 보건상담정책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대체하여 학과(전공)별로 정한 논문대체 교과목을 2과목 이상 추가로 이수한 자에게 석사 학위를, 조사연구보고서 형식의 연구논문을 박사학위청구논문에 대체하여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한 자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2016.9.1>

제31조(학위논문·종합시험·외국어시험) 학위논문제출 등의 자격, 절차, 시기,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시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9. 24.>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29조의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0조 학위논문 제출 등의 자격, 절차, 시기 등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제2조(석사학위신청 논문제출 및 작품발표 등의 요건) 석·박사학위신청을 위하여 논문제출 및 작품발표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학위는 24학점 이상, 박사학위는 36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기 취득한 학점의 평점평균이 B(3.0)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외국인은 TOPIK 4급 자격증(한국어 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제출(테솔학과 제외)<개정 2012.10.25.,2016.9.1>

<전문개정 2012.10.25.>

제3조(학위신청논문연구 및 작품발표 계획서 제출) 석·박사학위신청논문 작성 및 작품발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와 박사는 제3차 학기 초, 석·박사통합과정은 제7차 학기 초에 학위신청 논문연구 및 작품발표 계획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9.24., 2014.1.15>

제4조(석·박사학위신청논문 작성 제출 및 작품 발표 절차) ①논문 작성은 학위논문작성세칙에 따라 작성하되, 국한문으로 작성할 때에는 영문초록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학위신청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작품발표는 세칙에 의해 시행한다.

②석·박사학위신청논문 및 작품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9.24>

<개정 2014.1.15>

1. (석,박사)학위신청논문 연구계획서 (3학차)
  2. (석,박사)학위신청논문 심사위원 제청서 (4학차)
  3. (석,박사)학위신청논문 제출 지도교수추천서(4학차)
  4. 심사용 논문 (석사 3부, 박사 5부) 및 작품 (4학차)
  5. (석,박사)학위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별지서식 3> (4학차)
- <전문개정 2013.9.24., 2014.1.15>

제5조(논문제출 또는 작품발표의 시기 및 기한) ①석·박사학위신청논문의 제출과 석·박사학위신청 작품발표의 시기는 5월 또는 11월로 한다.

②제1항의 논문제출·작품발표는 석·박사과정 수료 후 석사는 3년, 박사는 5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병역의무로 인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6조(논문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 ①논문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구술시험 포함)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석사과정) 또는 5인(박사과정) 이상의 심사위원이 행하되, 심사의 진행은 심사위원 중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심사위원장이 주재한다. 단,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되고, 심사위원 중 석사학위는 1인, 박사학위는 2인을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②논문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취득하고, 심사위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7조(심사위원의 자격) 석·박사학위신청논문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위원으로 제청·위촉될 수 있는 자격은 본교의 부교수로 한다.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제8조(심사기간 및 결과보고) 논문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 개시 후 심사위원장은 6주 이내에 그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에 의해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1.11., 2013.9.24>

1. (석,박사)학위 신청논문 지도확인서
2. (석,박사)학위 신청논문 심사 결과표
3. 논문 (석사 4부, 박사 4부), 논문 한글 파일 및 작품. <개정 2013.9.24, 2015.8.26>

제9조(심사료의 지급) 논문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재심사)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사결과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 심사신청자는 논문 또는 작품발표를 보완하여 다음 학기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학위수여의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문을 제출하거나 작품발표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석·박사학위 수여) 제11조에서 규정한 석·박사학위 수여자로 결정된 자는 학위기로서 해당 석·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세부전공 표기가 필요한자는 본인, 지도교수,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신청에 의해 대학원장이 세부전공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9.24>

제13조(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과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별지 서식 1 또는 별지 서식 2의 학위기를 수여할 수 있다.

1. 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후보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수여할 학위종별을 결정한다.
2.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결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이를 확정한다.
4. 명예박사학위는 본교의 정규학위 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세부사항) 학위신청논문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자체진단 평가의견

- 학위청구논문 심사의 절차와 방법, 심사위원 선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5. 교육 및 연구역량

### 5.1 교육 역량

본 대학원은 대학원생이 지도교수 연구활동에 참여하여 보조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다양한 국책사업, 특성화 사업, 연구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음

#### ①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교육 역량	대학원생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학사과정의 전공이 지원학과의 전공과 다를 경우 보충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있음	충족(P)

##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첨부	학칙과 학칙(대학원)시행세칙

## ② 자체진단평가 내용

- 학칙(대학원) 시행세칙 제7조 및 제25조

제7조(연구과정생) ①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 석사과정에 개설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③ 연구과정생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2013.9.24>

④ <삭제 2011.12.20>

⑤ 연구과정생은 대학원장이 고시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보충과목의 취득)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규이수과목 외에 보충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1. 각 학위과정 :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이 지원학과의 전공과 다른 자

2. 기타 입학전형에서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② 보충과목은 대학원 교과목 중에서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 이내로 한다.

③ 보충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4>

## 5.2 연구 역량

단과대학 부설연구소를 통해 전임교원에게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전임교원이 연구와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함

### ①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연구 역량	전임교원의 연구지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연구년제도, 업적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연구업적을 강화하고 있음	충족(P)

##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첨부	광주대학교 규정

## ② 자체진단평가 내용

- 전임교원 연구지원을 위한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규정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급세칙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8.1.23>
1. 전임교원의 연구진흥지원
2. 전임교원의 연구·학술 활동지원
3. 부설연구소의 자체 연구 및 학술행사

# 6.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 6.1 교육 여건

2016년 기준 본 대학원은 재학생 385명, 전임교원 80명으로 교수당 학생 수는 4.81명 이고,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은 63.4%이며, 대학원생 1인당 연구 공간은 0.72m<sup>2</sup>로 교육 여건은 양호한 편임

### ①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교육 여건	정량 지표 : 교수당 학생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대학원생 연구공간, 장학금 지급	양호(P)

## 6.2 지원체계

대학원생을 위한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음

- 대학원생을 전담하는 행정직원 4명 배치
- 경비 요원의 24시간 교내 순찰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 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 장애학생들의 교육과 편의 제공
- 기숙사 사용을 원할 경우 입사 가능
- 각 학과마다 대학원생 자치조직으로 원우회를 구성하여 운영

### ①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지원 체계	대학원의 각종 지원체계	양호(P)